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44호**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행정규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개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인용법령등 체계·자구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정의, 형식, 절차 및 보완 요청 근거 명확화

나. 법령안·행정규칙안 협의 절차 보완

다. 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29일 까지 중소기업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1) 전자우편(이메일) : kudos@korea.kr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 팩스 : 044-204-7369
-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 204 - 736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행정규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개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인용법령등 체계·자구 정비 필요

## 2. 주요내용

- 가. 행정규칙 정의, 형식, 절차 및 보완 요청 근거 명확화
- 나. 법령안·행정규칙안 협의 절차 보완
- 다. 기타 인용조문 등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훈령·예규·고시·지침·공고·지시”를 “훈령·예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고시·지침·공고·지시·규정·규칙·통첩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법령의 주관부서)”를“(법령등의 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법령”을 각각 “법령등”으로 한다.

- ① 법령이나 행정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제6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제6항 전단 중 “법제처”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로 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9조의 법제검토 및 제15조제1항의 사전검토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관계기관 의견협의서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하여 첨부”를 “첨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중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를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제7호 중 “별지 제4호의 정책결정”을 “정책결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조문형식 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른 형식을 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 발령안”으로 본다.

제3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 제46조”를 “「행정절차법」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규제심사를 거쳐야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법령안”은 “행정규칙 발령안”으로 본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행정규칙의 발령번호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행정규칙이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개정 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주관부서에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행정규칙”이란 중소기업부장관이 발령하는 <u>훈령·예규·고시·지침·공고·지시</u>를 말한다.</p> <p>3.·4. (생략)</p> <p>제4조(법령의 주관부서) ① 법령의 <u>제정·개정·폐지</u>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p> <p>② <u>법령</u>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p> <p>③ 관계부서는 <u>제정·개정·폐</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훈령·예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고시·지침·공고·지시·규정·규칙·통첩 등을 포함한다)</u>----- -----.</p> <p>3.·4. (현행과 같음)</p> <p>제4조(법령등의 주관부서) ① 법령이나 행정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u>제정·개정·폐지</u>는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p> <p>② <u>법령등</u>----- ----- ----- ----- -----.</p> <p>③ -----</p>



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생략)

③ (생략)

<신 설>

제7조(법령안 입안) ① ~ ⑤ (생략)

⑥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에서 법제처에 법리적 쟁점 검토 및 조문화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8조(부내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려는 경우

-----  
-----  
--- 법령등-----  
-----.

④ ----- 법령등-----  
-----  
-----  
-----.  
-----.

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 입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  
-----.  
-----.

<삭 제>

제8조(부내 사전협의) ① -----  
-----

부내 관계부서에 법령안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제10조(법령안의 결재)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생략)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  
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1. (생략)

2. 별지 제1호의 의견조회용 서  
식

3. (생략)

③ (생략)

-----  
-----, 이 경  
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  
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법령안의 결재) ① (현행  
과 같음)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  
항에 대하여 제9조의 법제검토  
및 제15조제1항의 사전검토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관계기관 의견협의서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 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

가. 부패영향평가서

나.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및 체크리스트

나.

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

나.

4.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

제14조(각종 평가 등) -----  
-----  
-----  
----- 관계기관-----  
-----  
-----.

1. -----  
-----  
-----  
-----

<삭 제>

<삭 제>

2.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

<삭 제>

<삭 제>

3. -----  
-----  
-----

<삭 제>

<삭 제>

4. -----



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법령안에 신설·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6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단축하려는 경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규제영향분석서 -----  
----- 첨부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  
-----  
-----  
-----  
-----  
-----  
-----.

에는 법제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생략·단축할 수 있다.

1. (생략)

2. 법제정보시스템 등록 :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1일전까지 법제처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을 의뢰

가.·나. (생략)

다.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라.·마. (생략)

② ~ ⑦ (생략)

제17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 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  
-----.

1. (현행과 같음)

2.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경우 -----  
-----  
-----

라.·마.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서식 승인 신청) ①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  
-----  
-----  
-----  
-----  
-----  
-----  
-----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

준용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0조(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①

· ② (생략)

③ 주관부서는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법령안 상정을 위해 해당 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별지 제4호의 정책결정 사전 점검표

④ (생략)

제28조(행정규칙의 입안) ① (생략)

<신설>

조-----.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정책결정 -----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행정규칙의 입안)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조문 형식 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른 형식을 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규칙의 내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8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발령안 및 타부처 소관 행정규칙 발령안에 대한 관계부서와 규제개혁무담당관의 검토는 제8조, 제9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④·⑤ (생략)

제30조(행정규칙의 외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안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3항-----  
-----  
-----  
-----  
-----  
-----  
-----.

제29조(행정규칙의 내부 의견수렴 등) ① -----  
-----  
-----  
----.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 발령안”으로 본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30조(행정규칙의 외부 의견수렴 등) ① -----





② · ③ (생략)

라 제 · 개정 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주관부서에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